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수신 [REDACTED]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경유)

제목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2017-214 임용취소 처분 취소 청구)

1. 귀하가 제기한 '임용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7.
 7. 19. 불임의 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이 결정에 대하여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③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임 : 결정서 1부. 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무관 한유진 2017. 7. 27.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위원장

사무관 손민효

심사과장 직무대리 연가

상임위원 김진수

협조자

시행 심사과-9769 (2017. 7. 28.)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어진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http://www.ace.go.kr>

전화번호 044-203-7426 팩스번호 044-868-8125 / vanillayuu14@moe.go.kr / 비공개(5,6)

결정서

사건 : 2017-214 임용취소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REDACTED]

소속 [REDACTED] 대학교 직위 조교수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오범석

피청구인 : 학교법인 [REDACTED]
[REDACTED]
[REDACTED]

심사일 : 2017. 5. 10.(출석), 2017. 7. 19.(서면)

결정일 : 2017. 7. 19.

피청구인이 2017. 1. 31. 청구인에게 한 임용취소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7. 3. 9.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2016. 9. 26. [REDACTED] 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임용기간 : 2016. 9. 26. ~ 2018. 9. 25.).

나. 피청구인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1. 21. 허위기재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2016. 12. 28. 청구인에 대한 임용취소를 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제청하였고, 피청구인 이사회는 2017. 1. 25. 청구인에 대한 임용 취소를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 31. 청구인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2017. 2. 14. 임용취소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처분 사유

소속	성명	생년월일	현직위	임용취소 사유	임면일자
대학교	[REDACTED]	[REDACTED]	비정년직 조교수	임용지원서 허위기재	2017. 1. 31.

3. 청구인 주장

가. 학력사항 중 학위 표기의 잘못

청구인은 2005. 4. 1.부터 2006. 3. 22.까지 동경성심조리사전문대학 푸드코디네이터학과에서 공부하였으며, 2007. 3. 22.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에서는 전문대학을 수료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전문사’라고 표현하는데, 청구인은 푸드코디네이터 학과와 동경 GREGG 외국어 전문대학 졸업에 대해 한국식 표현으로 ‘학사’라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는 학위 취득에 대한 한국식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학위취득 사실이 없음에도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다.

한편, 미국 코넬대학교 학사학위 수료라고 기재한 부분은 미국 코넬대학에서 ‘호텔외식경영학 과정 수료’한 것을 ‘학위 수료’한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다소 오해의 소지를 발생케 한 점은 있다. 그러나 임용 심사 당시 청구인이 ‘전문사’ 대신 ‘학사’로, ‘호텔외식경영 과정 수료’가 아니라 ‘학사 수료’로 잘못 표기하여 기재한 점에 대해서는 학부 심사위원 및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논문 실적 사항

청구인이 제출한 연구실적 목록 중 ‘국제 프랜차이징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관하여’논문(이하 제1논문이라 한다)의 경우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 아니라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2016. 5. 20.자 발표논문인데, 이를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관광산업 이벤트에 관한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논문(이하 제2논문이라 한다)의 경우 논문 게재 날짜를 2016. 7. 30. 이라 기재하였으나 게재예정일과 게재일을 착각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논문은 2017. 2. 28. 실제 게재되었다.

‘외식서비스실패의 심각성과 통제성이 고객의 공정성과 신뢰, 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논문(이하 제3논문이라 한다)과 ‘레스토랑 식공간연출가 역할에 대한 여성고객들의 기대요인에 관한 연구’논문(이하 제4논문이라 한다)의 경우, 피청구인은 해당 업적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학술진흥 등재 후보지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후보지’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일반학회지를 등재 후보지로 오인하여 기재한 것이지 심사위원들을 기망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해당 사실관계들은 신규임용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모두 소명을 하였고, 이사회는 위 네 논문을 실적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논문만으로도 연구실적이 충족되므로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경력 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사항 중 ‘한솔요리학원’과 ‘한솔외식창업아카데미’근무 경력에 관해, ‘상근’경력이라 표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4대보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의 경력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두 산업체에서 주 3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해당 산업체에서도 상근직원 대우를 해 주었으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피청구인 신임교원 모집 공고 중 관광유통경영학부 호텔경영/외식경영 전공의 경우 해당지원분야 직무경

력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을 뿐, 그 근무형태가 상근/비상근임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4대 보험 자료 제출 요구 역시 공고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학부심사에서 '4대 보험'자료 제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사회에서 해당 경력을 인정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해당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관련 산업체 경력이 5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임용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임용 취소의 부당성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지원서 제출 당시 학위, 논문, 경력의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은 학과심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모두 알고 심사에 반영된 사항이다. 또한 청구인은 문제되는 경력이나 학위, 논문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임용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럼에도 익명 제보자의 내용을 토대로 임용 취소 처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용 취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임용 취소 사유의 존부

1) 학력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동경성심조리사전문대학 푸드코디네이터학과 및 동경외국어 전문학교 학위 표시와 관련하여, 일본 학위 표시인 '전문사'를 한국식 표현인 '학사'로 표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경성심조리사 전문대학과 동경외국어전문학교는 2년 과정으로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이고, 이를 수료했을 경우 '학사'가 아니라 '전문학사'로 표기함이 적정하다. 또한 소청심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경성심조리사전문대학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전문사'도 아니라 '조리사'자격에 불과하다는 점, 미국 코넬대학교 '학위수료'라 기재하면서 재학기간을 2005. 6. 1부터 2006. 8. 31.로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2005. 7. 11부터 2005. 7. 15.까지 5일간의 식음료경영 세미나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점을 고

려할 때, 이러한 학위기재가 착오나 실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2) 논문 실적 사항

청구인이 제출한 제1논문 및 제2논문이 게재된 곳이 학회지가 아님에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라 기재한 점, 제3논문 및 제4논문이 등재된 학술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가 아님에도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라 기재한 점에 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에 관해서도 착오에 의한 오기라 주장하나, 연구활동이 주요 업무인 대학교원으로서 자신이 논문을 게재한 대상이 학술지인지, 학술지 중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잘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논문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점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3) 경력 사항

경력사항 사실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4대 보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한솔요리학원’과 ‘한솔외식창업아카데미’에서 사실상 상근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2016학년도 2학기 █ 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확인하면, 해당 지원 분야 직무경력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하는데, 청구인의 경력사항 중 ‘한솔요리학원’과 ‘한솔외식창업아카데미’근무 경력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경력 사항은 2004. 4. 1부터 2008. 2. 29.까지 일본 동경(주)거산에서 근무한 경력 만 인정되므로 초빙공고 상 5년의 직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공고 당시 경력인정환산율표 나. 항목이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표기한 것에 비해 다. 항목은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으로만 표기하여 민간 경력의 경우 비전임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기관 경력에 비해 민간 산업체 경력을 우대할 다른 사유가 없는 점, 비전임 경력은 동일 기간 동안 여러 경력을 동시에 쌓는 것이 가능하므로 경력기간이 이중으로 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자격에서 요구하

는 경력사항은 전임 경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임용 취소의 적정 여부

1)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채용 심사 당시 학위, 논문, 경력의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학과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알고도 용인하여 정상적으로 임용하였다가,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임용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재한 다수의 허위사실 중 미국코넬대학교 학사수료 및 논문 9편 중 4편이 비등재지 실적이고, 1편은 기타학술지 논문임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에서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용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경성심조리사전문대학의 경우 ‘전문사’도 아니라 ‘조리사’ 자격으로 전문학사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소청심사과정인 2017. 5. 8. 확인된 점, 경력사항의 경우 상근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용 이후 사실 조회 등을 통해 경력을 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 임용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용 인정하고 임용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인지 비상근 경력임에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속기록의 대화 당사자인 정동환은 청구인의 채용에 관여한 자가 아니며, 대화내용은 학과에서 허위기재 사실을 인사위원회에 알린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할 뿐 교원인사위원회가 청구인의 허위기재 사실을 전부 알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해당 기재 사실들이 착오로 인한 오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학교원이 조리사 자격을 학사학위로 착오하였다거나 5일간의 식음료경영 세미나 참석을 ‘학위수료’로 착오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자신이 논문을 게재한 곳이 학회지인지, 학회지 중 학술진흥재단 후보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채용과정에서 피청구인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청구인이 일부 허위기재 사실을 채용 과정에서 인지하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임

용이후 허위기재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임용 당시에 용인하였던 허위 기재 사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취소 처분하는 것이 금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되지 않는다.

5. 결 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7. 19.

교 원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이근우 이근우

상임위원 김진수 김진수

위 원 김효신 김효신

위 원 손종학

위 원 지희순 지희순

위 원 오행자 오행자

위 원 우찬제 우찬제

위 원 박용표 박용표



위 정본임.

2017. 7.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